

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 . 21 .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12 . 29 .

다. 상정일자 : 1998. 12. 29 . 제62회평창군의회(정기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의 감면 및 경감으로 외자도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와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.
- 나.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후 주식등의 투자비율 미달, 소유주식의 한국인, 한국법인에 양도, 폐업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.

4. 검토 의견

- 가.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외자도입을 위하여 군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고
- 나. 지방세 감면후 주식등의 투자비율 미달, 소유주식의 한국인, 한국법인에 양도, 폐업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코자 하는 내용임.
- 다. 기타 내용 및 자구에도 별문제점이 없음.